

1. 개정이유

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 등 중에서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도로법」이 개정(법률 제21480호, 2026. 3. 17. 공포, 2026. 9. 18. 시행)됨에 따라,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증표)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안전순찰원(이하 “안전순찰원”이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
2. 18세 이상일 것

②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과 같다.

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순찰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안전순찰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사람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(앞쪽)

안전순찰원증 사진 3cm × 4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 홍길동 소속기관명
--

(뒤쪽)

제2000-0000호	
안전순찰원증	
소속	
성명	홍길동
생년월일	1900. 00. 00.
위 사람은 「도로법」 제57조의2에 따라 도로관리와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임을 증명합니다.	
년 월 일	
00000사장	직인
☎ (000)000-0000	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 2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	

54mm × 85.6mm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5조의2(고속국도 안전순찰원</u> <u>의 자격 및 증표) ① 법 제57조</u> <u>의2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안전</u> <u>순찰원(이하 “안전순찰원”이라</u> <u>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</u> <u>같다.</u> 1. <u>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</u> <u>안전순찰원의 업무를 수행하</u> <u>는데 필요한 자동차를 운전하</u> <u>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</u> <u>하고 있을 것</u> 2. <u>18세 이상일 것</u> ② <u>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</u> <u>증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과</u> <u>같다.</u>